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일반)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앞)

200 년 월 일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 (거래종류: 개별담보거래 개별신용거래 한도담보거래 한도신용거래)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먼저 은행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사항의 앞에 있는 “□” 내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금리적용선택용 | <input type="checkbox"/> 자동기한연장용 |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수수료용 | <input type="checkbox"/> 대출관련수수료용 |
| <input type="checkbox"/> 상환휴일용 | <input type="checkbox"/> 제로마진용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 금리적용방식 선택용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 관한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먼저 은행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사항의 앞에 있는 “□” 내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대출이자율

| | | | | |
|-------|---|---|---|---|
| 대출이자율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여신(은행 여신거래기 본약관 (가계용) 제3조제2 항제1호 선택) |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여신(은행 여신거래기 본약관 (가계용) 제3조제2 항제2호 선택) | <input type="checkbox"/> 은행내부기준 금리부여신 | 은행내부기준금 리+ (%) | 금리변 동주기 <input type="checkbox"/> 대출 개시일,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자납 입일 <input type="checkbox"/> 고정 금리기 간종료 일로부터 부터 매 ()개월 |
| | | <input type="checkbox"/> CD91일물기준 금리부여신 | 91일물 CD유동수익률+ (%) | |
| |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여신 |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납입 일로부터() 년간 고정금리 (%)를 적용 하며 이후 은행 내부기준금리 +(%)% 적용 | |
| | | <input type="checkbox"/> 수신(신탁) 금리부여신 | 수신(신탁)금리 +(%)% | |

제 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되며 합니다.

①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대출개시일과 그 날로부터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에 해당하는 날 각각에 대해 은행이 고시한 은행내부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은행내부기준금리는 변동주기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즉, 변동주기가 1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의 은행간 실제 콜거래수익률이 고려되고 변동주기가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채권평가사(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가 고시하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에 은행의 예상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은행의 조달원가는 가변적이므로 합니다.

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항에 따른 적용금리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내에 변경전 이율로 채무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CD91일물기준금리부여신이란 대출실행일과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변경적용일 각각에 대해 전영업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15시 30분 고시)을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 ③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여신이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은행내부기준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약정서만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으로 변경합니다. 이 때 고정금리는 금리고정기간별 은행의 예상 또는 실제조달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④ 수신금리부여신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금리감면, 가산

은행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사항의 앞에 있는 “□” 내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개시일,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개월동안 제1조에서 선택한 금리에 (가산금리: 연 %, 감면금리: 연 %)를 추가 적용합니다.

제4조 변동금리위험 안내문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서명

II. 자동기한연장용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거래조건)의 대출기한 자동연장 등에 관한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기한 도래시 은행의 내규에 따라 연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건변경이나 기한연장 등에 관

여신012-03 (20230521)

한 별도의 약정서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동연장하기로 합니다. 자동연장시 적용금리는 연장시점에서 은행이 재산출한 금리를 적용하며, 재산출한 금리가 연장전 금리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변경된 이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금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 내에 변경전 이율로 채무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① 대출 만기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②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단 은행이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납입한 경우는 자동연장합니다)
- ③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각종의 신용정보(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포함) 가 등록된 경우
- ④ 은행의 내규 등에 의해 자동연장조건이 안될 경우
- ⑤ 제3자가 담보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III.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용

제1조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의 지급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 전에 상환(한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의 계산식에 의해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조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의 계산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① 산식=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 대출금액×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 수수료율
- ②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 대출금액」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 전에 상환(한도해지)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 수수료율」은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거래조건) 수수료 또는 중도상환수료 항목에 기재된 요율을 말합니다.

제3조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의 면제

제1조 및 제2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중도한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① 은행의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해 상환하게 하는 경우
- ②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 ③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기상환의 경우
- ④ ()

IV. 대출관련수수료용

제1조 대출취급수수료

대출금의 취급수수료는 (대출 취급금액의 % (금 원), 고정금액 (금 원)로 합니다.

제2조 대출한도미사용수수료

- ① 대출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
본인이 은행과 약정한 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한도 미사용수수료의 계산
대출한도미사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1. 계산식: (약정한도평잔×())%-운용기간중 여신평잔) ×수수료율×운용기간(일수)÷365
 - 2. 수수료율: ()%
- 3.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한도거래대출의 「운용기간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제일 익영업일부터 금월 결제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이다.
 - ※ 매일의 적수=마감잔액+(일중 최고잔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나.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 ③ 대출한도미사용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1. 결제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 2.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대출거래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V. 상환휴일용

- ① 상환휴일기간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 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일 까지로 합니다.
-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상환휴일기간동안에는 매월 납부해야하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니다.
- ③ 원금상환방식의 경우 상환휴일기간동안에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며 대출이자만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당해 상환휴일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VI. 제로마진용

| |
|---|
| 대출이자율(c)=기준금리(a) ()%+스프레드(b) ()% |
| ① 제로마진 적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경과 후 최초도래하는 이자납입일까지로 합니다. |
| ② 제로마진 적용기간 동안에는 은행내부 기준금리 (a)로 계산된 대출원리금만을 상환하며 대출이자율(c)로 계산된 대출원리금과의 차액은 해당원리금 납입일에 대출원금으로 원가화됩니다. |
| ③ 제2항에 따라 대출원금화된 금액은 제로마진 적용기간 종료 후부터(<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본인 및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추가 약정서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본인(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여신012-03 (20230521)

| | |
|-------|-----------|
| 주소 | |
| 담보제공자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 연대보증인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당 | 확인 |
|----------------|----|----|
| | | |

여신012-03 (20230521)